

#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

제정 2008. 12. 16 규정 제 1호  
개정 2009. 12. 17 규정 제22호  
개정 2011. 01. 01 규정 제39호  
개정 2011. 07. 12 규정 제48호  
개정 2013. 01. 21 규정 제71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이사회(이하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9.12.17)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**제3조(구성)**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사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
**제4조(의결사항)**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재단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·관리에 관한 사항
4.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5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6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
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8. 법령,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
9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·의결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정관 및 직제·보수·인사·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신설 2011.01.01)

**제5조(회의소집)**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, 당연직 이사 부재시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명부라 함은 화성시문화재단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이사 명부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명부를 말한다.(개정 2009.12.17)

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·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(개정 2011.07.04)

**제6조(의결방법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 2012. 01. 21)

② 의안은 제안 설명, 심의, 표결의 순으로 처리한다.

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.

④ 의안은 원안가결·수정가결·부결·심의보류로 구분 의결하며,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·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,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.

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재심요청)** ① 의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,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, 필요시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임·직원의 출석)**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·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안전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권한의 위임)**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부의절차)**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부의안건(별지 제1호 서식)을 작성한 후, 대표이사 및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.(개정 2009.12.17)

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(별지 제2호 서식)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,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(별지 제3호 서식)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(개정 2011.07.04)

**제12조(의안설명)**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대표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 2009.12.17)

② 이사회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서면의결)**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의결(별지 4호 서식)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,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의사록 작성 · 보존)** ①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(별지 제5호 서식)을 작성하여 의장,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의사록, 서면결의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.

**제15조(의결사항 통보)**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(별지 제6호 서식)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이사회 사무관리)** ① 이사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,

간사는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서기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
2.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
3.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

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·관리한다.

**제17조 (이사회 참석수당)** ①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(각년도 예산편성지침)」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09.12.17)(개정 2011.01.01)

②대표이사 및 직원외의 자가 재단의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 「화성시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(개정 2011.01.01)

## 부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(2009.12.17 규정 제22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01.01 규정 제39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1.07.12 규정 제48호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1년 7월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13.01.21 규정 제7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아 시승인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11조제1항 관련)

의안번호	제 호	의결 년월일	200 . . .
안건구분	의결사항( ), 보고사항( )		

<h2>이사회 부의 안건명</h2>
---------------------

제안자	
제안연월일	년 월 일

1. 의결주문
2. 제안이유
3. 주요골자

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11조제3항 관련)

## 이사회 소집통지서

수 신 :

년도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 
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이사회 일시 : 년 월 일 시 분

2. 이사회 장소 :

3. 부 의 안 건 : 『별첨』

년 월 일

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이사장



[별지 제3호의 1서식] (제11조제3항 관련)

##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이사회 상정안건

보고사항

심의안건



## 제1회 이사회 의사록

○ 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

일 시	2009 . . .	기 록 자	
장 소			
재적이사		명	
출석이사		명	
참 여 자			

○ 의 결 사 항

의안번호	건 명	의결내용	소관부서

○ 회 의 록 : 별 첨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.

2009년 월 일

이 사 장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이 사	(인)
이 사	(인)		
감 사	(인)	감 사	(인)

[별지 제6호 서식] (제14조 관련)

##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

수 신 :

참 조 :

제 회 이사회( 년 월 일)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.

의안번호	제안부서
건 명	
<input type="checkbox"/> 심의결과 :	
년 월 일	
재단법인 화성시문화재단 이사장	